

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6. 10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일부개정(제41조, 2006. 4. 28공포시행)에 따라 같은법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
 -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명 “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함
- 구미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- 정례회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 때 회기는 15일 이내로 규정 함(안 제3조)
-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7일,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1일로 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8조, 제39조, 제41조, 시행령 제19조의4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8조, 제39조,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간 총 회의 일수)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회기) ①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.
②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

제4조(집회일)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(지방선거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, 시민의 의견수렴
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
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의회 회의규칙」을
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·제3조
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
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
다.